

# 벨기에 特許法·西獨 意匠法 일부改正

## 7月 1日부터 施行되는 改正내용을 알아본다

벨기에에는 지난해 特許法 一部를 改正, 지난 1月 1日부터 施行했다. 이번 特許法改正은 EPC 조항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추가特許 및 輸入特許制度는 폐지되었다. 본고는 舊法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간추린 内容이다. 아울러 88年 7月 1日부터 施行되는 西獨의 改正 意匠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 벨기에

#### 特許의 種類

신규성조사를 거친 것은 그 존속기간이 20년이며, 신규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존속기간을 6년으로 수정했다.

한편 개량特許(추가特許), 수입特許의 제도는 폐지되었다.

#### 特許 要件

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성에 대하여는 EPC52(1) 및 54내지 57조와 동일하며, 단일성에 대하여도 EPC와 같다.

#### 特許手續

① 종래 방식심사에서와 같이 청구가 있으면(發明의 단일성에 관한 審査 및) 신규성에 관한 調査를 행해야 한다.

청구는 出願과 동시 또는 出願으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6년이 된다.

② 내용 외국出願에서 EPC에 의한 調査보고를 제출해도 된다.

③ 신규성 조사보고에 관계있는 선행기술이 인용되어 있을 때, 클레임과 요지의 보정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에 의하여 명세서(Description의 부분)를 보정할 수 있다.

④ 분할出願은 자기의 발의로써 가능하나 단, 特許의 부여 또는 조사보고의 통지전에만 가능하다. 한편 審査에 의하여 2이상의 發明이 포함되는 것이 명확한 때는, 클레임의 최초 發明에 대해서만 조사가 행해지며 他發明에 대해서는 추가요금의 지불이 있어야 조사가 행해진다.

⑤ 特許부여는 出願日 또는 優先日로부터 18개월 경과후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부여된다. 또 존속기간이 6년인 特許는 청구에 의해 出願日로부터 1개월정도면 特許가 부여되며, 特許出願은 特許付與까지 비밀이 보호된다.

#### 更新料(年金)

갱신료는 出願日로 3년째부터 지불하게 되며 1986년 중에 出願된 件에 대하여도 신법이 적용됨에 따라 제 2년째의 요금납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출원에 필요한 정보

發明者の 특징은 特許에의 표시로 희망하는 경우에만 하여 필요하다.

#### 出願에 필요한 書類

① 위임장은 포괄적인 委任狀(General powr)도 가능.

② 프랑스語 또는 네덜란드語에 의한 명세서, 클레

입 및 發明의 요지(3통)

③ 도면(3통)

④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出願의 出願인과  
별기에 出願의 出願인이 상이한 경우는 양도증.

⑤ 優先證

⑥ EPO 出願 또는 EPO에서 조사가 행해진 대응의 外國  
出願일때는 EPO에 의한 調查보고의 부분(任意)

### 出願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① 원서...特許를 청구한 선언

② (우선권주장의 경우) 先出願의 出願日 및 국명

③ 명세서, 클레임, 도면(정식이 아니어도 됨)

④ 다른 수속상의 요건은 出願으로부터 2개월내에  
보정을 요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4개월까지 연장  
이 가능하다.

⑤ 우선증은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6개월내에 제출  
할 것을 요한다.

⑥ 先出願의 出願번호는 최선의 우선일로부터 13개  
월이내에 통지할 것을 요한다.

### 代理

제외자는 간단한 特許出願이외의 수속(신규성조사의  
청구·보정·년금등의 요금납부)을 할때는 별기에 特  
許廳에서 인정한 직업대리인(Patentagent 또는 Barri-  
ster)에 의하여 대리해야 한다.

제77조에 비추어 新法은 그시행일전에 부여된 特許  
에도 적용되며, 新法의 시행일의 경우 기득의 권리는  
유지된다. 따라서 舊法에서 부여된 特許는 그 조건에  
관하여 구법에 따라서 취급된다.

한편 舊法하에서 부여된 特許에 관한 在外者の 수속  
에를들면 양도명의변경, 실시계약의 신고, 강제실시권  
의 청구, 연금지불등은 직업적 대리인에 의하여 代理  
되어야 한다.

## 西 獨

西獨意匠法이 改正되어 1988年 7月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意匠出願의 제출장소가 西獨特許廳에 한한다(중  
태에는 外國으로부터의 出願은 西獨特許廳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國內出願人은 재판소의 어느곳  
에나 出願했기 때문에 登錄意匠의 조사가 대단히 곤란

했다).

▲ 舊法에서는 意匠登錄出願人은 出願時에 平面(2차  
원) 意匠인가 3차원意匠인가를 표시할 의무가 있으며  
意匠의 보호는 평면意匠, 3차원意匠의 어느것에 한하  
였다. 新法에서는 동일한 意匠權으로 평면(2차원)의장  
및 3차원意匠 어느것도 보호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결  
과 出願時에 平面(2차원)意匠인가 3차원意匠인가의 구  
별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종래의 필요했던 意匠의  
제조번호의 표시도 요하지 않는다.

▲ 통상, 意匠 또는 모형을 표시한 사진 또는 화상  
을 원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에는 표면  
의 意匠이 표시된 때에 한해 그차원의 意匠본본을 제  
출할 수 있다. 또한 사진 또는 화상은 모형의 특징을  
충분히 명료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모형자체를 제출할  
수 있다.

特許廳은 실제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를 결  
정한다. 더우기 현시점에서 DM400의 부가요금을 납부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부가요금을 그때마다 납부할 필  
요가 있다.

▲ 意匠의 보호기간은 최초 5년간이며 5년씩 최장  
20년까지 연장된다. (종래는 出願人의 선택에 따라 먼  
저 1내지 3년의 보호기간이 인정되며 최장 15년까  
지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기간은 5년이 연장되었  
다).

▲ 6개월의 신규성 상실유예기간이 도입됐다(우선일  
전 6개월이내의 자기공개는 신규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또 出願의 公告를 18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의  
방책은 제철상품판매자에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意匠을 소멸시킨 것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 特許廳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出願된 意匠을  
분류하여 신실의 意匠公報에 사진과 함께 登錄意匠을  
공고한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어떤 意匠이 登錄되었는가를 감  
시, 조사하는 것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어느누구도 登錄意匠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이와같이 하여 模造에 중지부를 찍었다.

또 舊法과 동일하게 의장의 신규성의 조사는 행하지  
않는다.

▲ 改正法은 1988年 7月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이후의  
意匠出願은 改正法하에서 出願된다.

이날 이전에 出願된 意匠出願은 현행법이 적용된  
다. <○>